

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(예비)창업자 모집 공고

인천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'소셜벤처' 분야의 청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, 고도화된 아이템 개발 및 전략 수립을 통해 우수한 청년 기업을 육성하는 「2024년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」에 참여할 (예비)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4년 4월 17일
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장

1

사업개요

사업목적 : 인천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'소셜벤처'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기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

지원대상 : 인천시 현안문제 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(만18~39세)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기창업자

* 신청자격은 동 공고 '2. 신청자격 및 요건' 참조

지원내용 : 사업화 자금 (평균 2천만원), 창업프로그램 등

사업화 자금	창업프로그램	심화 멘토링
재료, 외주용역, 인건비, 광고선전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	역량강화교육(12H), IR피칭(1회), 네트워킹 프로그램(3회), 성과공유회(1회)	(예비)창업자의 경영·기술·투자·마케팅 등 자문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지원 (총 2회, 회당 3시간)

□ **협약기간** : 협약시작일로부터 **6개월** 이내 ('24. 6월 ~ '24.11.15. 예정)

□ **선정규모** : 총 **8명** 내외

* 선정규모는 신청·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2

신청자격 및 요건

□ 신청자격

- 공고일('24.4.17.)* 기준 인천시 현안문제 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(만18세~39세)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(개인, 법인)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기창업자

-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

* 만18~39세(1984.4.18.~2006.4.17.출생)

- 사업화지원조건

- 본사가 인천에 소재한 기업으로, 사업화지원 대상자로 선발된 후 1개월 내 인천에 사업자등록 또는 본사 이전 필수

□ 모집분야

분야	현안문제 주요내용 및 사례
원도심 재생	빈집정비, 주거환경 개선 등
복지	노숙인, 독거노인, 고독사, 자살, 아동학대, 장애인시설 또는 푸드뱅크 등
환경	매립지, 소각장, 쓰레기, 플라스틱 처리, 재활용, 소음, 악취, 수질개선,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부품 등
기타	기타 인천시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나, 타·시도의 주목을 통해 전국적인 문제가 된 이슈

□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선정된 후 1개월 내 인천에 사업자등록 또는 본사 이전을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선정된 후 1개월 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 (사업자 등록)을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는 「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당 사업 수행기관 인천대학교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심화 멘토링을 이행하고, 주관기관의 사업장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장 조성·임차, 근로자 근태 현황, 구입 재료 사용내역, 외주용역 이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음

3

지원내용

□ **협약기간** :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('24. 6월 ~ '24.11.15. 예정)

□ **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등

구 분	지 원 세 부 내 용														
사업화 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제품 제작, 광고선전, 사업모델 (BM)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2천만원 지원 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** 사업화 자금은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• 총사업비 = 지원금 100% (대응자금 없음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비목정의 및 기준 (세부기준 선정자 별도 안내) 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비목</th> <th>비목 정의</th> <th>집행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재료비</td> <td>• 사업계획서 상의 필요한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</td> <td rowspan="5">한도 없음 (양산자금 사용 불가)</td> </tr> <tr> <td>외주용역비</td> <td>•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,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>인건비</td> <td>•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* 대표자, 대표자와 특수관계인(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의 자)는 인건비 지급 불가</td> </tr> <tr> <td>지급수수료</td> <td>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(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사무실 임대료, 법인설립비 등)</td> </tr> <tr> <td>광고선전비</td> <td>•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비목	비목 정의	집행기준	재료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필요한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	한도 없음 (양산자금 사용 불가)	외주용역비	•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,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인건비	•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* 대표자, 대표자와 특수관계인(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의 자)는 인건비 지급 불가	지급수수료	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(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사무실 임대료, 법인설립비 등)	광고선전비	•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	비목	비목 정의	집행기준												
	재료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필요한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	한도 없음 (양산자금 사용 불가)												
	외주용역비	•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,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												
	인건비	•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* 대표자, 대표자와 특수관계인(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의 자)는 인건비 지급 불가													
	지급수수료	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(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사무실 임대료, 법인설립비 등)													
	광고선전비	•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													
창업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역량강화교육(12H) : 창업역량강화 교육 지원 • 네트워킹 프로그램(3회) : 창업기업 간 교류 기회 지원 • IR피칭데이(1회) : IR 피칭을 통한 우수기업 선정 및 시상 • 성과공유회(1회) : 사업 수행사항 및 주요성과에 대한 성과공유 														
멘토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적 기업 인증,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, 투자유치, 마케팅, 전문분야(세무, 변리, 노무 등) 멘토링 희망분야를 파악하여 창업기업 별 맞춤형 멘토링 2회 이상 지원 														

4

신청 및 접수

□ **신청·접수 기간** : '24. 4. 17.(수) ~ 5. 14.(화) 18:00까지

< 유의 사항 >

-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제출확인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1~2일 이전**에 미리 제출하는 것을 권장
- **이메일로만 신청이 가능**하고,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접수일 이후 일체 내용 수정 불가

□ **신청방법**

-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공식 이메일(prestartup@inu.ac.kr) 제출

< 유의 사항 >

- 사업 신청은 **반드시 신청자(예비창업자) 본인이 신청**하여야 하며, **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**

□ **제출서류** :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(startup.inu.ac.kr)에서 양식 다운로드

-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신청서 1부
- 사업계획서 1부
 - *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(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-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
- 신분증 사본 1부
- 사업자등록증 1부
 - * 공고일('24.4.17.) 기준 7년 이내('17.4.18.이후 창업) 기창업자에 한함

5

평가 및 선정

□ **평가 절차** : 총 2단계 평가 (서류 → 발표)를 통해 최종 선정

<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절차(안) >

① 요건검토	② 서류평가	③ 자격 확인	④ 발표평가	⑤ 최종 선정
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	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평가 (2배수 내외 선정)	신청자격 서류 및 발표평가 자료제출	신청자 발표 및 질의응답	선정 확정 및 지원금 심의 후 최종 공고
'24.5월 중	'24.5.21.예정	'24.5.22.~	'24.5.28.예정	'24.5월 말~6월

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
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 방법

- ① **요건검토**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 - ② **서류평가** : 사업계획서를 평가 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,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
 - ③ **자격확인**
 -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신청자격 추가 확인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은 신청자의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
 -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발표평가 자료제출
 - ④ **발표평가** : 지역문제 현안여부, 아이디어, (예비)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 (동 사업 신청자)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
- * 평가시간 : 20분 이내 (발표 10분 이내 + 질의응답 10분)
** 평가방법 : 대면평가 원칙
- ⑤ **최종선정** :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

-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, (예비)창업자별 사업비*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

*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

-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주관 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
* 선정평가 결과 (예비)창업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□ 평가지표

- 창업 아이템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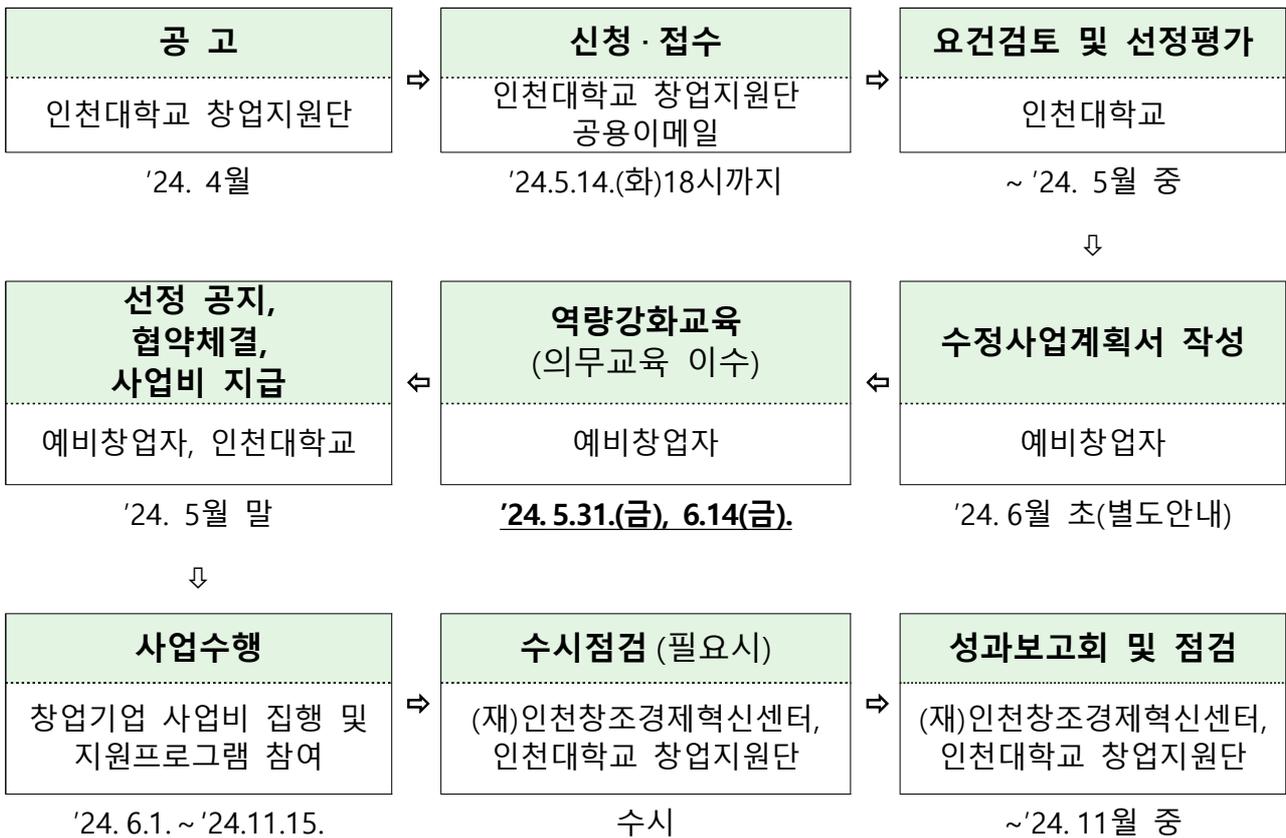
* 선정규모와 관계없이,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< 서류·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>

평가항목	세부 내용	배점
지역문제 현안여부	• 인천시 지역문제 현안과의 관련 여부	30
아이디어 참신성	• 소셜벤처 아이디어의 참신성	20
아이디어 구체성	•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인지 여부	20
아이디어 시장성	• 아이디어의 시장성 여부 / BM 구축여부	20
팀 구성 현황	• 팀 구성 여부 / 조직 수행 능력	10

□ 사업 운영일정

※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

6

유의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(사업자등록) 예정 또는 창업 중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,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신청접수 마감일시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
- 전 평가과정에 신청한 (예비)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-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 동의 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「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」, 전담·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,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
-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주관기관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선정된

(예비)창업자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위를 취할 수 있음

- 선정자는 본 사업용 사업비 전용의 은행 계좌(사업비계좌)와 카드 개설 및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
*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
7

기타사항

사업 신청 문의

- 주관기관 담당자
 -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유다올 032-835-9689

붙임 1**지원제외 대상 업종**

- 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희주점업	56211
2	무도유희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